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8. 12. 6(목) 총 6매(본문2)	
담당부서	주거 재생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안진애, 사무관 유지만, 주무관 이남일 • ☎ (044) 201-4937, 4941, 4942 	
	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처형사회적기업TF팀장 이광진, 과장 정은정 • ☎ (031) 697-7790, 7792 	
보 도 일 시		2018년 12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6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

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·인천 민부마을 등 4곳에서 주민교육 등 순차 진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원장 김인선), 새마을금고 중앙회(회장 박차훈), 신협 중앙회(회장 김윤식)와 12.7일(금) 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『마을관리 협동조합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『도시재생 뉴딜 로드맵』(3.27일 발표)에 따라,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,
 -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, 생활SOC 등을 운영·관리하고, 태양광 서비스, 마을상점,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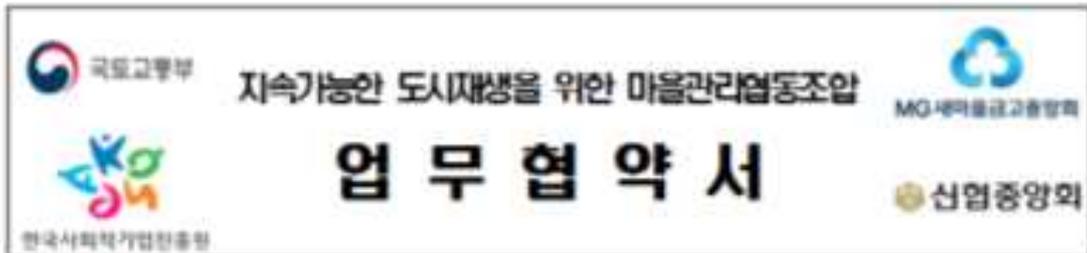
※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요내용

- ▶ (추진배경)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·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
- ▶ (개념)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,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,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
 - * 사회적 기업 등 他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
- ▶ (주요사업) 저층주택 관리, 집수리, 사회적주택 운영·관리, 태양광발전, 마을상점 등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**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**과 **생활SOC 공급**을 적극 추진하고,
 - 특히,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**생활SOC**의 운영·유지·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.
 - 이번 **업무협약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 -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·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,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생활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.
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생활SOC의 운영·관리 등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, 홍보 등을 지원하고,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(MOU)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**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**을 만들어갈 계획이다.
 - 특히,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'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(인천 만부마을, 안양 명학마을, 충주 지현동, 공주 옥룡동)에서 주민교육,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, '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국토교통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협중앙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실현, 주민 삶의 질 개선, 생활 SOC의 주민중심 운영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목표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제도·자원·경험 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지역에 주민이 주도하는 『마을관리협동조합』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,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.

1.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·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,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생활 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.
2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생활 SOC 운영관리 등 주민 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·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, 홍보 등을 지원하고, 생활 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.

제3조(실무협의체 구성) 각 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,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기관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 의무)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타기관의 업무내용 중 비밀유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.

제5조(협약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 단,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기관은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각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를 결정한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시 서면합의 통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.

2018년 12월 7일

국토교통부
장관 김 현 미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원장 김 인 선

새마을금고중앙회
회장 박 차 훈

신협중앙회
회장 김 윤 식

참고2

마을관리 협동조합 개요

(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방안 요약, 7.27일 보도자료 既배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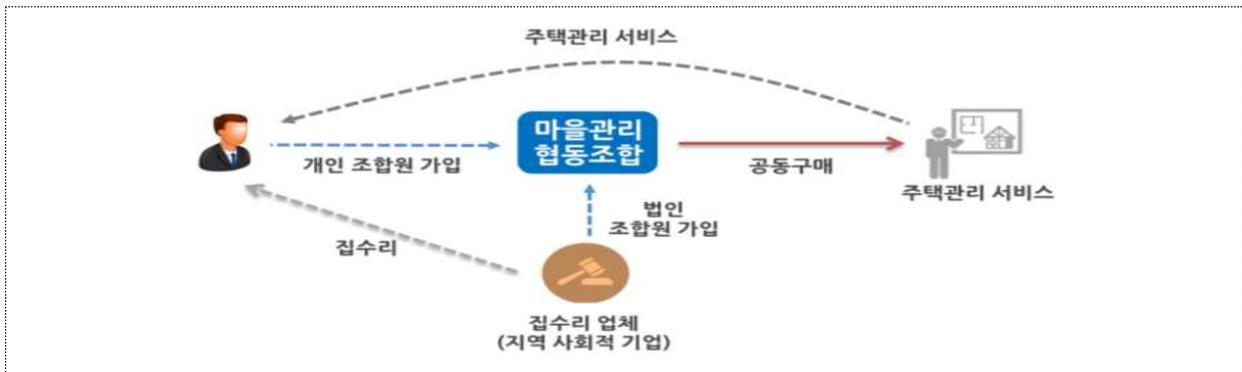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·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
-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, 정부는 초기 사업비 지원, 지역 금융기관 매칭 등 협동조합 구성·운영 지원

□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

-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,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,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
 - * 사회적 기업 등 회사 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
 - 주민이 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연회비(出5만원, 年2만원 수준)를 납부하면, 저렴한 자부담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구조
 - * (예) 내부 집수리 비용 = 70%(자부담) + 30%(협동조합 잉여금 지원)

【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(예시)】



-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물품생산 등 부가가치 생산기능이 부재하여,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*도 시행
 - *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, 태양광 발전사업 등
-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*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, 잉여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만 사용 (배당 금지)
 - *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,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
□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

- (조직)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(의사결정기구), 사무국(집행기구), 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* 등으로 구성

* 협동조합 운영과정의 주민간 갈등 예방, 중재역할 수행(외부인사 50% 참여)

【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】



- (공공지원) 마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강화

- (정부·지자체) 국토부는 산업부,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*를 사업화 하도록 지원하고,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조합 초기운영비** 지원

* ① 주택관리서비스 ② 집수리서비스 ③ 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 마을상점

** 현행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상 5천만원 지급 (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)

- (도시재생지원기구 추가지정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, 협동조합 설립지원

* 지역순회자문단,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,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 등

- (운영지원 전문기관)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이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고, 지역 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지원

*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사무국 역할도 수행가능